

- 신림선 경전철 결정(안)의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 -

심 사 보 고 서

| | |
|----------|----|
| 접수 번호 | 31 |
|----------|----|

2016년 2월 26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청 원 자 : 장기철(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5 한국개나
리아파트 101동 705호) 외 443명

나. 소개의원 :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다. 접수일자 : 2016년 2월 1일

라. 회부일자 : 2016년 2월 2일

마. 상정일자 :

-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6년 2월 26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2008년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발표이후 수차례에 걸쳐 당 아파트
지하로 터널을 뚫는 것을 반대하여 왔음
- 여의대방로 쪽 직선코스로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함

3.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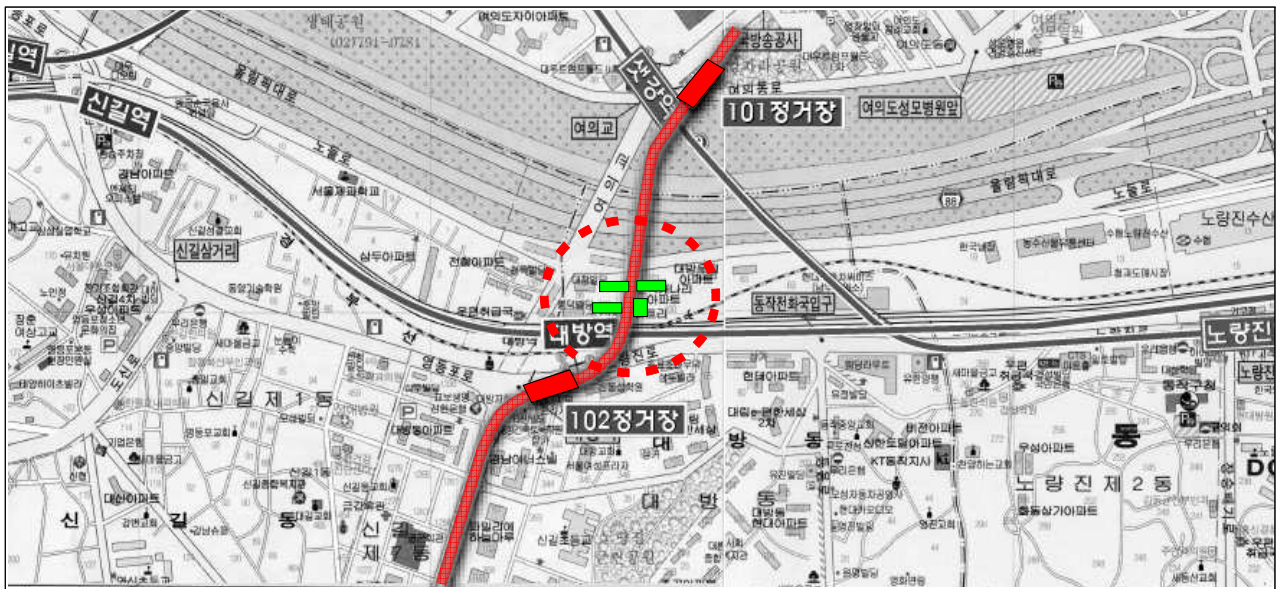
- 신림선 경전철 노선(안)이 주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방한 국개나리아파트, 신일해피트리아파트 지하를 지나감에 따라 주민사유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노선을 직선코스인 여의대방로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함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청원의 개요

- 동 청원은 기 건설 추진 중인 신림선 경전철 노선이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한국개나리아파트와 신일해피트리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설계 중에 있는 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사유재산에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 해당 구간의 신림선 경전철 노선을 여의대방로로 변경하여 건설할 것을 요청하는 것임

※참고 : 한국개나리아파트 · 신일해피트리아파트 지하 통과 신림선 노선도



나. 신림선 경전철 건설 추진 현황

- 신림선 경전철은 여의도부터 서울대 앞까지 구간에 총연장 7.8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의 규모로 건설 추진 중에 있는 사업¹⁾으로 2015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 및 확정 · 고시되어 사업 추진

1) 총사업비 8,318억원(국비 931억원, 시비 3,105억원, 민자4,282억원)

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같은 해 8월 12일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체결, 9월 7일 기공식 개최 등을 거쳐 현재 민간사업자가 실시설계 중에 있음

-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민간사업자는 서울시에 최종 실시설계(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서울시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며, 통보결과 승인 확정시 민간사업자는 공사에 착수하는 절차로 사업이 추진됨

다. 검토의견

- 동 청원은 신림선 경전철의 시점구간인 101정거장²⁾과 102정거장³⁾ 사이의 노선 계획을 기존 한국개나리아파트와 신일해피트리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것에서 여의대방로 지하부를 통과하도록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 「도시철도법」 제5조 등에⁴⁾ 따르면 동 청원의 요청을 수용하여 시점구간의 노선 일부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수립된 도시철도망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서울시가 별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 9호선 셋강역과 환승

3) 국철 대방역과 환승

4) 「도시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망계획의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관보에의 고시를 생략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4조(도시철도망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별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2.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

변경(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및 관보 고시 등 전반적인 절차를 재수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또한 서울시는 신림선 경전철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당초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생략⁵⁾하였는바, 시점구간의 노선 일부 변경의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

- 한편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시점구간 노선의 일부 변경이 민자적격성 재조사 기준인 ‘총사업비 20%이상 증가’나 ‘추정 수요량 30%이상 감소’에는 해당하지 않아 민자적격성 재조사 수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⁶⁾

최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재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 등에서 동 사안을 ‘사업의 주요 내용 변경’으로 판단할 경우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개연성도 존재함

- 이와 관련하여 동 청원의 내용대로 시점구간의 노선 일부를 변경할 경우 한국개나리아파트와 신일해피트리아파트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5) 「도시철도법」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서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6)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5-82호)」 제58조(민자적격성 재조사) ① 주무관청은 해당 사업추진 단계에서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물량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이상 증가하거나, 추정 수요량(실시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시협약시 수요량)이 100분의 30이상 감소된 경우 등 사업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65조에 따른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지의 여부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재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경전철 건설 이후에는 노선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림선 경전철 건설 지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점구간의 노선 일부 변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음

- 다만, 신림선 경전철 실시협약의 경우 2년여의 기간 동안 협상을 거듭한 끝에 2015년 8월 12일에야 협약이 체결되었고, 노선 일부 변경시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크게 변동될 경우 협약 변경 등으로 사업이 일부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협상을 하더라도 노선 일부 변경에 대한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어 서울시의 재정지원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
- 한편, 서울시장은 동 청원에 대해 대방역과의 환승용이, 기존 지하보도 출입구 활용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 여의보도교 신설 포함 노선주변 시설물계획 고려 등을 통해 노선이 계획되었고 노선 일부 변경시 또 다른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함께 ‘청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하겠다.’⁷⁾을 제출하였음

7) 도시철도계획부-1478(2016.02.17.)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의견서 : 별첨 1

[별첨 1]

채택의견서

- 청원명 : 신림선 경전철 결정(안)의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채택의견
 - 동 청원은 기 건설 추진 중인 신림선 경전철 노선이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한국개나리아파트와 신일해피트리아파트 지하를 통과토록 계획되어 설계 중에 있는 것을 여의대방로로 변경하여 건설토록 요청하는 것임
 - 노선 일부 변경시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크게 변동될 경우 협약 변경 등으로 사업이 일부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노선 일부 변경에 대한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어 서울시의 재정 지원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다만, 한국개나리아파트와 신일해피트리아파트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경전철 건설 이후에는 노선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림선 경전철 건설 지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점구간의 노선 일부 변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

청 원 요 지 서

| | | | |
|--|----------------------------|--|------------|
| 접수번호 | 31 | 접수연월일 | 2016. 2. 1 |
| 청원인 | 주 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5 한국개나리아파트 101동 705호 | |
| | 성 명 | 장기철외 443명 | |
| 소개의원 | 김혜련 | 소속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 건 명 | 신림선 경전철 결정(안)의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 | | |
| 소 관 위 원 회 | 교통위원회 | | |
| <p>○ 신림선 경전철 노선(안)이 주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방한국개나리아파트, 신일해피트리아파트 지하를 지나감에 따라 주민사유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노선을 직선코스인 여의대방로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함</p> | | | |